

교육품질관리 규정

□ 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품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그리고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과 및 행정부서 성과지표 평가
2. 대학발전계획 추진과제 성과평가
3. 주요 정량지표 평가
4. 대학 자체평가
5. 교육 만족도 조사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평가

제3조(담당) 대학 차원의 교육품질 관리는 기획처에서 총괄한다.

제4조(학과 및 행정부서 성과지표 평가) ① 학과 및 행정부서는 교육품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관리한다.

1.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로 구성된 학과의 성과지표
 2. 공통지표, 부서지표, 자율지표로 구성된 부서의 성과지표
- ② 학과 및 행정부서에 대한 성과지표의 선정과 변경은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③ 학과 및 행정부서 성과지표 평가는 각각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과 및 행정부서의 계획수립과 추진에 대한 지원업무는 기획처 기획과에서 담당하고, 평가와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는 기획처 평가과에서 담당한다.
- ⑤ 기획과는 차기연도에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달성해야 할 성과지표를 공지하고, 성과지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 통지한다.
- ⑥ 학과 및 행정부서는 매년 성과지표의 달성 목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과에 제출한다.
- ⑦ 기획과는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근거로 매년 대학운영계획서를 작성해,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⑧ 학과 및 행정부서는 매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를 포함한 운영성과를 자체평가하여 평가과에

운영결과서로 제출한다.

⑨ 평가과는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운영결과서를 근거로 매년 대학운영결과서를 작성해,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⑩ 평가과는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학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대학발전과 교육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대학발전계획 추진과제 성과평가)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대학발전계획 추진과제 성과평가의 제반사항은 별도의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운영 규정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대학 자체평가)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대학 자체평가의 제반사항은 별도의 대학자체평가규정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주요 정량지표 평가) ① 평가과는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량지표를 조사해 관리한다.

② 주요 정량지표의 선정과 변경은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주요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과는 주요 정량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교육만족도 조사)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만족도 조사의 제반사항은 별도의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교육품질관리현황의 보고) 평가과는 본교 교육품질에 대한 관리현황을 종합해 매 학기말에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분석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결과의 활용) 기획처는 교육품질관리 활동에 대해 평가, 분석, 심의된 결과들이 대학구성원에게 공유되게 하며, 다음과 같은 대학의 주요 정책결정에 환류되도록 한다.

1.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과 개정
2. 대학자체평가계획의 수립과 개정
3.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운영 정책 개선
4. 연도별 행정부서 및 학과의 운영계획 수립과 개선
5. 기타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반 방향 설정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